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근거 법령

- 지방세 관련 인용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

3. 제안 이유

-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시세 감면 조례의 내용 보완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며,
-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 골자

가.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세 감면 조항의 단서 조항 삭제(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4조 제1항)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현행 : 유료노인복지시설
- 개정안 : 노인복지시설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제2항)

- 현행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 개정안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 현행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개정
-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 제12조로 개정

마.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바.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등에관법률에 의하여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5.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 또한, 인용법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조문정리를 위한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